

로스쿨 실무교수에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야,,

- 실무분야 감각 상실... 교육부실로 이어져
- 영리목적 아닌 공익소송 형식으로 되어야

로스쿨 실무 교수들에게 제한적인 소송수행권을 부여해 실무감각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의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금)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실무교수들이 공익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중탁(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1일 서울 지방변호사회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로스쿨 교과과정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였다.

성중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법정에 결코 서서는 안 되는 '휴업' 변호사일 뿐인 로스쿨 실무교수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실무 분야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곧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어 "서울변회가 사내변호사에 대해 연 10건의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로스쿨 실무교수들에게도 민사, 형사, 행정, 헌법, 가사 등 사건별로 연 1건씩 소송수행을 인정하거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3~4건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무교수들의 소송은 영리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익소송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중탁 교수는 부족한 실무교수도 빨리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가 출신 교수들의 강의가 늘고 있고 그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나 호응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무교수들의 수는 법정 비율인 30%만을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무 과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전문 분야의 실무가들이 전임 교수진으로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수(5217기) 서울변회 법제이사도 "로스쿨 3곳 중 1곳은 실무경력교원 충족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실무교수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전제인용)